

제285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회의 2022. 3. 22.(화)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자치행정위원회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원병일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10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2. 제안이유

치매 조기발견, 치매가족지원,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등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효율적인 치매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및 제5조)
- 나. 치매관리사업 비용 지원 및 지원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6조 및 제7조)
- 다. 치매관리사업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라.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안 제10조 ~ 제13조)
- 마.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치매조기발견 및 원활한 치매관리가 이뤄질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
- 라. 입법예고 : 2022. 3. 11. ~ 3. 17.(7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의 주요 내용과 의회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치매 예방· 관리 선도모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치매예방과 관리를 위한 친화적 환경 구축 강화를 위해 전부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개정 내용을 보고드리면,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치매관리사업의 비용 지원과 지원대상,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업무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과 지역사회 협력 자원 발굴 및 연계 사업을 포함시켜 치매안심센터에 대한 기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치매환자는 9.69%로 전국 평균인 10.33%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부합한 타당한 조례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동 조례 개정안은 시민들의 수요를 반영한 치매예방 및 관리정책 수립을 위해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입 및 세출 예산의 증감이 현저하게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신규 발생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 치매관리법

법률 제17795호 일부개정 2020. 12. 29.

제3조(국가 등의 의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업무 종사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치매관리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치매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
 - 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 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
 - 4. 치매에 관한 홍보·교육
 - 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 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 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
 - 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 6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
 - 6의3.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사업
 - 6의4. 치매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7.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③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가족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신청의 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안내할 수 있다.
- ④ 치매안심센터의 시설·인력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 1의2. 제16조, 제16조의2 및 제17조에 따른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 1의3. 제17조의2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조례)

남양주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6.05.12 조례 제1350호

(전부개정) 2019.11.07 조례 제16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남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남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
2. 치매환자의 실종예방 지원
3.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홍보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만 60세 이상의 시민
2. 치매환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시의 관할 보건소에 설치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센터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이 된다.

제6조(지역사회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센터에 치매관리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치매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치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96호, 2019.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단체 ⇄	법규명 ⇄	제·개정일 ⇄	법규구분	제·개정구분	소관부서
경기도 구리시	 구리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1-06-11	조례	일부개정	소통공보담당관
경기도 안산시	 안산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1-04-21	조례	제정	시민소통관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1-04-12	조례	전문개정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21-03-12	조례	일부개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20-09-29	조례	일부개정	시민소통담당관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07-10	조례	일부개정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05-20	조례	제정	
경기도 의왕시	 의왕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05-07	조례	제정	
경기도 광명시	 광명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20-03-25	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9-07-15	조례	일부개정	행정기획조정실 주민자치과

총 17건 10건씩 ▾

 현행  입  연혁  폐지  예정  합  한시

자치단체 ⇄	법규명 ⇄	제·개정일 ⇄	법규구분	제·개정구분	소관부서
경기도 양평군	 양평군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9-04-17	조례	전문개정	소통협력담당관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9-03-08	조례	제정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8-11-16	조례	일부개정	시민소통기획관
경기도 안성시	 안성시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2017-03-24	조례	제정	행정안전국 행정과
경기도 오산시	 오산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2013-11-29	조례	제정	기획감사관
경기도 과천시	 과천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2012-08-14	조례	제정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이웃분쟁·공공갈등 조정 및 관리 조례	2019-06-28	조례	제정	부시장 미래전략관